

환경책임 및 환경피해구제 제도 도입 토론회

◆ 일 시 : 2013년 3월 13일(수) 10:00~12:00

◆ 장 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B1)

◆ 주 최 : 국회의원 한정애

◆ 후 원 : 환경부



국회의원 한 정 애

개회사

반갑습니다.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한정애입니다.

『환경책임 및 환경피해구제 도입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토론회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참석해주신 각계 전문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대사회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환경오염 가능성이 높아지고 오염사고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환경법 및 환경피해구제는 한계가 있어 제도 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최근 대표적인 환경오염사고인 충남 태안 앞바다의 유류오염사고의 경우 지난 1월 배상판결이 있었지만 피해 범위가 서로 상이해 지속적인 논쟁이 예상되며 작년 구미의 불산가스 누출사고 또한 환경피해에 대한 구제를 진행 중이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아 구체적인 피해 책임과 구제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행 환경법상의 환경책임제도에 대한 미비점과 환경피해제도 도입방안의 필요성을 논의 할 수 있는 오늘 토론회가 매우 뜻 깊고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환경책임 및 환경피해구제 도입 토론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원하며 이번 토론회 발표와 사회를 맡아주신 전문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3월

국회의원 한정애

환경책임에 대한 현행 환경법제 현황과 문제점 (요지)

김 태 호(대법원 재판연구관)

1. 환경책임과 피해구제제도

-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등 환경오염 사고가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으나 그에 대해 책임을 묻도록 하는 환경피해구제 제도는 환경책임을 묻는 데 대해 익숙하지 않은 구조로 되어 있음.
- 환경오염사고는 발생하더라도 손해배상을 통해 피해자를 구제하고 오염을 복구하며 사후적으로 책임을 묻는 데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음.
- 이는 환경오염 사고의 특수성과 관련이 있음. 이하에서 현재 실무에서는 환경오염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왜 곤란한지를 살펴봄으로써 문제해결에서 발생하는 공백을 입법의 방법으로 해소할 필요성을 확인해 보고자 함
- 환경오염사고에 대한 구제 제도는 크게 환경피해를 사법적인 차원에서 구제하는 방법(손해배상청구와 환경침해의 방지를 구하는 유지청구가 대표적임)과 환경피해를 공법적인 차원에서 구제하는 방법(환경을 오염하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국가에 의한 환경오염에 대한 국가배상소송이 대표적임. 이론적으로는 국가로 하여금 사전 예방적으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함)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특히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환경책임을 묻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주된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음. 환경책임법을 제정하더라도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어야 실질적인 의미가 있음.
- ▶ 환경피해의 손해 범위를 확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생명, 신체, 건강, 물건에 대한 피해를 모두 배상하는 것이 원칙임. 현재로서는 생태학적 손해에 대해서 이를 손해 배상에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지 않음
- ▶ 환경피해의 책임주체를 명확히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환경책임법을 제정하더라도 책임 주체의 범위를 확정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 환경피해액수를 산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와 책임 있는 원인 간의 인과관계를 확정하기가 어려움. 다만 이 부분은 판례가 일찍부터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의 인과관계에 있어 이른바 신개연설의 태도를 취하여 인과관계 입증의 책임을 완화하고 있음.
- ▶ 환경피해의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다수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다수당사자 간의 책임범위와 피해구제 범위를 확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특히 다수당사자의 분산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최근의 개인정보출사건과 유사한 경우들임)에는 정식으로 권리구제를 청구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음
- ▶ 손해배상책임의 경우 고의·과실의 요건을 요구하게 될 경우 과실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피해발생의 원인이 가해자가 지배하는 활동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자가 과실을 입증할 증거에 접근하기가 어

렵고, 과학적인 규명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음. 이에 판례는 과실의 인정 기준을 완화하고 있으며, 입법적으로는 무과실책임의 법리를 명문화하려는 시도들이 있음. 환경정책기본법,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원자력손해배상법 제3조 등에서 무과실책임의 원칙을 천명함으로써 과실 입증의 곤란함을 피하도록 하려는 입법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대표적으로 환경정책기본법의 조항을 보면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이나 무과실책임조항이 법에 의해서 해석의 명확한 지침이 되고 있다고 하기 어려워 여전히 손해배상 인정에 한계가 있음

- ▶ 실제 소송을 하더라도 환경문제 해결에 필요한 전문적인 인력을 동원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
- ▶ 기존 법제도에서는 기금제도를 두어 손해를 보전해 줄 수 있는 장치를 두고 있으나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액수도 충분하지 않음

2. 환경책임법의 제정과 관련한 시사점

- 환경책임과 관련하여서는 우선 확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환경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원인자로 하여금 피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을 입법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이 점이 분명해 질 때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이 명확히 될 수 있고, 환경오염사고의 예방적 효과가 제고될 수 있음
- 특히 환경피해의 특수성상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는 문제는 환경사고에 대한 집단소송을 용이하게 제기할 수 있도록 구조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 다만 손해배상의 확대로만 피해자 구제 및 환경피해 복구가 가능해 지는 것은 아님. 환경책임 원인자를 명확히 하기 어려운 경우도 여전히 있을 수 있으며, 또 환경책임 원인자를 너무 넓혀 두면 경제활동 당사자가 예측가능한 경제활동을 하기가 어렵고, 산업 활동으로 인한 리스크 부담이 커져서 경제활동의 지나친 위축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환경오염 피해자 등에게 국가 등에 의한 일종의 손실보상 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데, 국가의 일시적인 부조를 넘어 기금 제도나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의무보험 제도 등을 통해 환경피해의 사회적 구조를 도모할 수 있음

○ 이상과 같은 손해 전보의 시스템은 기존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별도의 단행법을 만들어 시행할 수도 있음. 독일의 경우에는 환경소송에 대해서도 별도의 단행법을 만들어 두고 있으며(이는 국제협약을 이행한 결과로서 환경단체 등에 대해서 소송자격을 부여하는 것 등을 주요한 내용으로 함), 1990년에 환경책임법을 별도로 제정함 ⇨ 그 이전에는 독일도 민법과 공해방지법의 일반조항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인정하였는데, 화재사고로 인한 라인강 오염을 계기로 환경책임법 제정에 나서게 됨

- ▶ 핵심 골자는 환경을 위태하게 할 수 있는 시설주에게 무과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함
- ▶ 위에서 살펴본 인과관계 입증의 곤란함을 완화하기 위하여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의 전환 규정을 두고 있음 ⇨ 그러나 이 점은 우리나라 판례가 지속적으로 입증책임의 완화를 인정해 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큰 차

이가 없다고 볼 수도 있음

- ▶ 환경침해 소송의 당사자들은 정보 부족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에 정보제공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음
- ▶ 환경책임법에 의해서 환경책임을 용이하게 인정하는 한도액을 두고 있음. 이를 초과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일반 불법행위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음.
- ▶ 환경책임법은 시설주가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도록 하기 위하여 효력을 가지는 지역에서 영업을 할 권한이 있는 보험자에 책임보험을 가입하거나, 연방이나 주가 면책의무 또는 보장의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기관이 책임보험과 비교할 만한 내용의 면책의무 또는 보장의무를 부담함으로써 보상배려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여기서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은 역시 보험자의 책임보험 가입인데, 이를 통해 피해자의 충분한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음